

구성원 참여·소통 운영 규정

제정 2017. 12. 08.

담당 : 기획팀(950-5424)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대학소통위원회)
제5조(구성)	제6조(위원장)	제7조(임기)	제8조(기능)
제9조(회의)	제10조(회의록)	제11조(간사)	제12조(운영범위)
제13조(운영절차)	제14조(운영시기)	제15조(세부사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 간의 참여 및 소통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의 “구성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관련 있는 재학생, 교원, 직원, 졸업생, 학부모, 성서선교회 목회자, 지역사회, 산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서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대학소통위원회

제4조(대학소통위원회) 구성원 간의 참여 및 소통 활동 관련하여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중에서 총장이 임명 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과 구성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3명(교수, 부교수, 조교수 각 1명)
2. 직원: 3명(과장, 계장·주임, 일반직원 각 1명)
3. 학생: 3명(학생회장, 학과대표, 일반학생 각 1명)
4. 기타 : 약간명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하는 1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협의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
2. 대학 행정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의사 반영이 필요한 사항
3. 학과, 부서 등 공식 조직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내 현안 사항
4. 구성원 간의 갈등 해결과 화합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학기말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원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3장 운영절차

제12조(운영범위) 본 대학교는 구성원 참여·소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한다.

1. 의견 수렴 간담회
2. 설명회
3. 만족도 및 수요조사
4. 정례회의
5. 총장과의 대화

제13조(운영절차) ① 본 대학교는 구성원 참여·소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순으로 진행한다.

1. 구성원 참여·소통 활동 시행 계획 준비
2. 구성원 참여·소통 활동 관련 ‘구성원 대학 활동 참여·소통 위원회(가칭)’ 회의
3. 구성원 참여·소통 활동 시행
4. 구성원 참여·소통 활동 결과보고

② 구성원 참여·소통 활동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준용하며 구성원 간 합의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활동 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운영시기) 본 대학교는 구성원 참여·소통 활동과 관련하여 각 구성원 간 활동을 매 학기 1회 이상 시행한다.

제15조(세부사항)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